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관련 지원 확대 》

- 박상혁의원안(의안번호 제778호) ■ 주철현의원안(의안번호 제982호)
- 박수영의원안(의안번호 제1011호) ■ 유동수의원안(의안번호 제1276호)
- 장종태의원안(의안번호 제1347호) ■ 정준호의원안(의안번호 제1349호)
- 이훈기의원안(의안번호 제1360호) ■ 박지혜의원안(의안번호 제1605호)
- 정일영의원안(의안번호 제1773호)

《 공공주택사업자의 양로시설 등 설치 》

- 민홍철의원안(의안번호 제748호)

《 무인정보단말기,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 》

- 소병훈의원안(의안번호 제1076호) ■ 이수진의원안(의안번호 제2073호)

《 지역봉사지도원 업무에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지도 업무 추가 등 》

- 정일영의원안(의안번호 제1766호)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의 간호·진료 보조자 등 포함 》

- 문정복의원안(의안번호 제1943호)

《 노인복지관의 노인종합복지관으로서 별도 신설 등 》

- 이수진의원안(의안번호 제2023호)

2024.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경윤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23
1.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관련 지원 확대 (박상혁·주철현·박수영· 유동수·장종태·정준호·이훈기·박지혜·정일영 의원안 제37조의2 등)	23
2. 공공주택사업자의 양로시설 등 설치(민홍철의원안 제35조의2 신설)	37
3. 무인정보단말기,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 (소병훈의원안 제26조의2, 이수진의의원안 제4조의3 신설 등)	43
4. 지역봉사지도원 업무에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지도 업무 추가 및 활동비 지급(정일영의원안 제24조제2항제4호의3 및 제3항 신설)	49
5.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에서 간호·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 포함(문정복의원안 제39조의6제2항제1호의2 등)	55
6. 노인복지관의 노인종합복지관으로서 별도 신설 및 경로당 식사 제공 지원사항 규정(이수진의의원안 제31조제8호 등)	61
III . 참고자료	83
1. 현행법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현황	83
2.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면허등록자 수 및 활동자 수	84
3. 노인복지관 사업 및 프로그램 예시(「2024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85
4. 시도별 노인복지관 설치현황	86

I. 개요

1. 민홍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4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민홍철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6. 20.
- (3) 회 부 일 : 2024. 6. 2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의 주거 및 의료 복지를 위하여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양로시설’과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에 관한 설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주거지 내에서 노인의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 내의 양로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주거지 내 노인에 대한 보호체계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에는 그 단지에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 내용과 연계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설치한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의 운영 의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2.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78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상혁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6. 21.

(3) 회 부 일 : 2024. 6. 2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는 지원대상에서 빠져있음.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모임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복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전국 대다수 경로당이 양곡 외에 밑반찬 등 부식 구입을 위한 비용은 지원을 받지 못해 어르신들이 별도로 부식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급식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음. 최근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에 대해 공동급식 및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위해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용

외에 부식 구입과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를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

3. 주철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98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주철현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6. 26.
- (3) 회 부 일 : 2024. 6.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를 근거로 경로당이 지원받는 국비는 양곡비와 냉·난방비에 한정되고, 기타 운영비 지원은 지자체의 몫으로 치부되어 왔음.

그러나 경로당에서 통상 노인 대상 식사제공 사업을 시행하는데, 국가가 양곡비만을 지원하다 보니 양곡 외 부식에 필요한 식자재와 이를 조리하는 인력에 드는 비용은 오롯이 지자체의 몫으로 전가되어 경로당이 받는 보조금은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인 상황임.

일례로 지자체별 경로당 보조금은 충북 단양군의 경우 월 11만 5천 원인 반면 경기 부천시의 경우 최소 월 37만 원으로 나타남. 이처럼 경로당의 운영 안정성이 그 소재지의 재정 역량에 좌우됨에 따라, 지역별 노인의 복지수준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경로당의 식사제공사업은 지역사회 노인에게 식사 뿐 아니라 사회

적 교류의 기회도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에도 효과적임. 아울러 고령화사회는 도·농을 가리지 않는 현상임을 감안하면, 국가의 경로당 지원폭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노인공동체의 구심점으로 자리잡은 경로당의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양곡비와 냉·난방비 외에도 부식용 식자재 구입비 및 기타 취사에 수반하는 인건비·연료비 등을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하고, 그 외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지역에 따른 차등 없이 어르신의 고른 식생활을 보장하고 노인공동체의 건강한 교류의 장인 경로당의 활성화를 장려하는 동시에, 고령화에 들어선 국가에 걸맞는 책임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4. 박수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11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수영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6. 27.

(3) 회 부 일 : 2024. 6. 2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받은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절감하여도 그 목적 이외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어 미사용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고 있으므로,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 등을 운영비에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 등을 통합한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7조의2).

5.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76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소병훈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4. 6. 27.

(3) 회 부 일 : 2024. 6. 2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각종 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무인정보단말기의 도입이 확산되고,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의 경우 젊은 세대와의 정보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활용에 있어 노인의 접근 편의를 제고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6. 유동수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7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유동수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7. 2.
- (3) 회 부 일 : 2024. 7. 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경로당에 지원된 보조금이 남으면 반환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보조금을 절약하여 쓰신 후, 지원금이 남았다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보조금 유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로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부식비 및 취사에 이용되는 비용을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금을 절약해 사용하는 사례가 많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비로 쓸 수 있는 항목에 부식 구입비 및 취사용 연료비를 추가하고, 경로당에서 보조금을 자체 절감한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하고, 운영비에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추가하며, 자체 절감한 비용

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운용에 재량권을 경
로당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7. 장종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4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장종태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4. 7. 3.
- (3) 회 부 일 : 2024. 7.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높은 노인 빈곤율과 독거노인 증가세를 고려할 때 경로당에서의 노인 대상 식사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이 2005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여력에 따라 경로당에서의 급식 제공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내용과 규모에 있어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한계가 있음.

또한, 정부의 보조금 운영 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중 일부를 절약하더라도 이를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데, 이로 인하여 경로당에 보조된 보조금들도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로당 운영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업이기는 하나, 국가가 부식 구입비와 급식 제공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로당이 양곡·부식 구입비와 냉난방비용을 자체 노력

으로 절감한 경우 절감한 비용을 부식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
조금 운영에 특례를 두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8. 정준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4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준호의원 등 15인
- (2) 제 안 일 : 2024. 7. 3.
- (3) 회 부 일 : 2024. 7.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곡구입비, 냉난방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각 경로당의 지역적 여건 및 재정 상황에 따라 식사 제공의 여부 및 제공 형태 등이 상이하게 운영되어, 경로당 급식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더욱이, 급식지원에 필요한 인건비에 대해 현행 법령에서 다루고 있지 않아 상당수의 경로당이 급식지원 인력에 대해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이 주 5일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주·부식비 및 급식 지원 인건비 등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어르신들의 일상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

9. 이훈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60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훈기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4. 7. 3.

(3) 회 부 일 : 2024. 7.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비 지원 및 공과금 감면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으나, 그 밖에 경로당에서의 식사 제공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 인구에 대한 식사 제공은 노인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을 것임. 따라서 현행법에 정부가 경로당을 비롯한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노인에게 대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정부의 경로당에 대한 보조를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에만 제한하고 있어, 급식 제공에 소요되는 다양한 비용에 대한 보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를 개선해야 할 것임.

이에, 정부가 양곡구입비 뿐만 아니라 급식에 필요한 다양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차등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가 노인복지관과 경로

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통한 급식 제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등).

10. 박지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60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지혜의원 등 20인
- (2) 제 안 일 : 2024. 7. 11.
- (3) 회 부 일 : 2024. 7. 1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로당에서의 급식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마다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국가가 경로당의 급식 제공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별 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경로당에 보조할 수 있는 비용에 현행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연료비에 더하여 부식 구입비, 취사용 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경로당이 자체 노력으로 보조되는 예산을 절감한 경우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양곡 구입비 등 다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 급식 운영에 재량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1항).

11. 정일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766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일영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7. 15.

(3) 회 부 일 : 2024. 7. 1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이들에게 지역봉사를 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하여 활동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증가(2022년 기준 926만7천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8.5%를 차지)에 따른 경로당의 증가로 운영에 어려운 경우가 있어 지역봉사지도원의 경험 등을 경로당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에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지도 업무를 추가하고 이들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제4호의3 및 제3항 신설).

12. 정일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77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일영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7. 16.
- (3) 회 부 일 : 2024. 7. 1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하지만 경로당에 지원되는 비용은 보조금으로 절약하여 남은 금액은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나, 어르신들이 냉난방비 지원금이 남았다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보조금 유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경로당에서 자체 절감한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하고, 자체 절감한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운용에 재량권을 경로당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 2).

13. 문정복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4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문정복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7. 18.
- (3) 회 부 일 : 2024. 7. 1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신고의무자에 해당되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환자의 간호에 많은 부분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를 포함함으로써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노인학대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14.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02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7. 19.
- (3) 회 부 일 : 2024. 7. 2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은 다른 노인복지시설에 비하여 접근성과 이용률이 높은 시설로써 노인복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실질적인 역할이나 필요한 지원사항이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존에 여가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던 노인복지관에 대하여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용어와 정의를 개정함으로써 상담, 돌봄, 건강지원, 노년사회화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함.

또한, 노인의 소통 공간뿐만 아니라 공동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경로당의 경우 노인의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을 위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 5일 이상 점심식사 제공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1조제8호 신설 등).

15.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07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7. 22.

(3) 회 부 일 : 2024. 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무인정보단말기,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사용을 통해 소비·거래 등 생활방식의 편리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디지털 문화에서 소외된 노인들은 이 같은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음식점, 영화관 등 서비스업의 곳곳에 키오스크가 도입되면서 사용 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은 높은 불안감을 겪거나 서비스 이용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노인들의 낮은 스마트 기기 활용률로 인해 다른 세대와의 정보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도 심화되고 있음. 노인들이 경험하는 이 같은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불편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는 자로 하여금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노인 인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자 하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등).

II. 검토의견

1.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관련 지원 확대 (박상혁·주철현·박수영·유동수·장종태·정준호·이훈기·박지혜·정일영 의원안 제37조의2 등)

□ 9건의 개정안은 각각 경로당 운영 관련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박상혁·주철현·유동수·장종태·정준호·이훈기·박지혜의원안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급식에 필요한 비용(부식구입비·인건비·취사용 연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주철현의원안은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를 국가·지자체의 의무로 강화함.

박수영·유동수·정일영의원안에서는 양곡구입비·냉난방비 자체절감 비용의 경우 국고 반납 없이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훈기의원안은 국가·지자체로 하여금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경로당)의 급식제공¹⁾²⁾을 추가하고, 경로당 양곡구입비 뿐만 아니라 급식에 필요한 다양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등).

-
- 1) 이훈기의원안(2201360)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급식지원,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급식지원,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급식지원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7](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복지관에만 식당을 두도록 하고 있고, 「2024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는 급식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현 행	박상혁 의원안	주철현 의원안	박수영 의원안	유동수 의원안	장종태 의원안	정준호 의원안	이훈기 의원안	박지혜 의원안	정일영 의원안
<신 설>							제37조의 2(노인여 가복지시 설을 통 한 급식 제공 지 원)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는 노인 복지관이 나 경로 당 에 서 노 인 의 건 강 에 필 요 한 영 양 을 충 족 할 수 있는 식품으로 구 성 된 급 식 을 제공하기 위한 방 안을 마 련하여야 한다.		
제37조의 2(경로당 에 대한 양곡구입 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 는 지방 자치단체 는 경로 당에 대 하여 예 산의 범 위 에 서 양 곡 (「양곡 관리법」 에 따른 정부관리 양 곡 을 포 함 한	제37조의 2(경로당 에 대한 양곡구입 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 는 지방 자치단체 는 경로 당에 대 하여 예 산의 범 위 에 서 공동급식 및 주5일 점심식사 제 공 에 필 요 한 양 곡 (「양곡	제37조의 2(경로당 에 대한 양곡구입 비 등의 보조 등) ① 국가 또 는 지 방자치단 체는 경 로 당 에 대 하 여 예 산 의 범위에서 양 곡 (「양 곡 관리법」 에 따른 정부관리 양 곡 을 포 함 한	제37조의 2(경로당 에 대한 운영비의 보조) ① 국가 또 는 지방 자치단체 는 경로 당에 대 하여 결 로당 운 영 비 (「양 곡 관리법」 에 따른 정부관리 양곡 구 입 비 용, 냉 난 방 비 용 을	제37조의 2(경로당 에 대한 양곡구입 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 는 지방 자치단체 는 경로 당에 대 하여 예 산의 범 위 에 서 다음 각 호의 운 영 비(이 하 이 조 에서 “운 영 비”라 한 다)의	제37조의 2(경로당 에 대한 양곡구입 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 는 지방 자치단체 는 경로 당에 대 하여 예 산의 범 위 에 서 양 곡 (「양 곡 관리법」 에 따른 정부관리 양 곡 을 포 함 한	제37조의 2(경로당 에 대한 양곡구입 비 등의 보조) ① (현 행 과 같음)	제37조의 3(경로당 에 대한 급 식 비 등의 보 조) ① 국가 또 는 지방 자치단체 는 경로 당에 대 하여 예 산의 범 위 에 서 양 곡 (「양 곡 관리법」 에 따른 정부관리 양 곡 을 포 함 한	제37조의 2(경로당 에 대한 양곡구입 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 는 지방 자치단체 는 경로 당에 대 하여 예 산의 범 위 에 서 다음 각 호에 해 당 하 는 비 용 의 전부 또 는 일부 를 보조 할 수 있	제37조의 2(경로당 에 대한 양곡구입 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 는 지방 자치단체 는 경로 당에 대 하여 예 산의 범 위 에 서 다음 각 호의 운 영 비의 전부 또 는 일부 를 보조 할 수 있

다) 구입 비의 전 부 또는 일 부 를 보 조 할 수 있다.	관리법」 에 따른 정부관리 양 곡 을 포 함 한 다) 구 입 비 및 부 식구입비 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보 조할 수 있다.	다) 구 입 비, 경로 당 에 서 제 공 하 는 부 식 용 식 자 재 구 입 비 및 기타 취 사 에 수만하는 인건비· 연 료 비 등 비용 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보 조하여야 한다..	포 함 한 다)의 전 부 또는 일 부 를 보 조 할 수 있다.	전부 또 는 일부 를 보조 할 수 있 다.	다) 및 부식 구 입 비 의 전부 또 는 일부 를 보조 할 수 있 다.	다) 구 입 비 등 급 식 제 공 에 필요 한 비용 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보 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 가는 지 방자치단 체의 재 정 상황 을 고려 하여 지 방자치단 체 별로 지원 규 모나 보 조 비율 에 차등 을 둘 수 있다.	할 수 있 다.	다.
<신 설>				1. 양곡 (「양곡 관 리 법」에 따른 정 부 관 리 양 곡 을 포 함 한 다) 및 부식(副 食)의 구입비		1. 양곡 (「양곡 관 리 법」에 따른 정 부 관 리 양 곡 을 포 함 한 다) 및 부식(副 食) 구 입비		1. 양곡 (「양곡 관 리 법」에 따른 정 부 관 리 양 곡 을 포 함 한 다)구입 비
<신 설>				2. 냉난 방 비용 및 취사 용 연료 비		2. 냉난 방 비용		2. 냉난 방 비용
<신 설>						3. 취사 용 연료 비		
<신 설>						4. 취사 에 필요 한 인건 비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u>냉난방비용 및 취사용 연료비</u>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비용의 전부 또는 <u>일부</u> 를 <u>보조</u> 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신 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우 외에도 경로당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이 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된 구입비 또는 제2호에 따라 지급된 냉난방비용 및 취사용 연료비를 자체 노력으로 절감한 경우에는 절감한 비용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절감한 비용을 운영비로 사용할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소요되는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식비, 취사용 연료비 및 급식 지원 인건비 등 경로당의 공동급식과 주 5일 점심 식사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식비, 취사용 연료비 및 급식 지원 인건비 등 경로당의 공동급식과 주 5일 점심 식사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 본문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1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경로당(경로당을 운영 하는 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자체 노력으로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 외 한

제37조의 3(경로당 에 대한 공과금 감면) (생략)				<u>날부터 1</u> <u>5일 이내</u> <u>에 사용</u> <u>명세서를</u> <u>보건복지</u> <u>부장관</u> <u>또는 지</u> <u>방자치단</u> <u>체의 장</u> <u>에게 제</u> <u>출하여야</u> <u>한다.</u>					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 의 어느 하 나 에 해당하는 비 용 을 절감하여 교 부 된 보조금이 결 산 에 따라 확 정된 보 조 금 을 초과하는 경우 해 당 경로 당이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보조 금이 확 정된 회 계연도에 한 하 여 제1항 각 호의 비 용 중 다 른 비용 에 이를 사 용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u>공포한</u> <u>날부터</u> 시행한 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u>경과한</u> <u>날부터</u> 시행한 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u>날부터</u> 시행한 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 월 1일부 터 시행 한다.	<부 칙> <u>이 법은</u> 2025년 1 월 1일부 터 시행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u>경과한</u> <u>날부터</u> 시행한 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u>날부터</u> 시행한 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 월 1일부 터 시행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 월 1일부 터 시행 한다.

□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로 2024년 4월말 기준, 전국 총 68,658개가 있음. 친목도모, 취미여가프로그램이용 외에 취약노인의 경우 경로당을 폭염·혹한 등을 대피하거나 식사 해결 등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는데, 독거노인 증가 등으로 식사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음.

< 독거노인 비율과 경로당 이용 이유 >

(복수응답 가능 / 단위: %)

연도	독거노인 비율	경로당 이용 이유							
		친목도모	식사 서비스 이용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	정서지원 프로그램 이용	일자리 사업 참여	자원봉사 활동 참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2017	19.0	91.4	57.2	8.3	9.0	0.3	0.6	1.5	0.6
2020	19.8	82.9	62.5	19.0	11.0	2.3	1.6	1.3	0.2

* 자료: 「장래인구추계」, 「노인 실태조사」

**독거노인 비율은 60대 이상 인구 중 비율임

□ 이처럼 경로당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국고보조는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 지원에 그치고 있는데, 2024년 경로당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 예산은 800억원 수준임.

< 2024년도 경로당 지원 현황 >

구분	냉방비	난방비	양곡구입비	운영비
지원주체	국고 50%(서울 20%, 지방비 50%(서울 80%)) * 「지방교부세법」 개정('14년)에 따라 '15년부터 특별교부세 미교부			지방비 100%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제37조의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지원내용	33만원 월 16.5만원, (2개월) 지원	194만원 월 40만원, (5개월) 지원	41.8만원 정부양곡 20kg (52,340원) 8포 지원	공과금, 식사보조비, 물품구입비, 생활용품비 등 지자체마다 상이

* 자료: 보건복지부

□ 경로당 이용 이유에서 식사 이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지원부족으로 2020년 기준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은 66,843개소 중 28,041개소(42.0%)이고, 급식인력이 지원되는 곳은 15,037개소(22.5%)에 불과함.

< 경로당 식사 제공 및 지원인력 유무(2020) >

(조사기간: 2020.8.29~2020.9.29. / 단위: 개소, %)

경로당	식사 제공		
		주5회 이상	급식인력 지원
66,843	28,041 (42.0%)	7,745 (11.6%)	15,037 (22.5%)

* 자료: 「경로당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이화여대산학협력단, 2020.

□ 보건복지부가 2024년 4월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경로당 68,658개 중 58,558개(85.3%)가 식사를 제공하고 있어 2020년보다 개선되었으나, 평균 주 3.4회 식사가 제공되고 있으며 지역 간에 격차가 큰 것(2.9회~4.4회)으로 확인되었음.

< 지역별 경로당 식사 제공 현황 >

시 도	경로당 수	식사 제공중인 경로당 수	주 7일 중 평균 식사 제공횟수
합계	68,658	58,558	3.4
서울특별시	3,609	3,090	3.3
부산광역시	2,403	2,152	3.3
대구광역시	1,809	1,318	3.3
인천광역시	1,555	1,341	3.7
광주광역시	1,380	1,291	3.6
대전광역시	850	814	3.0
울산광역시	836	695	3.0
세종특별자치시	517	498	3.2
경기도	10,020	8,391	3.1
강원특별자치도	3,319	2,443	3.2
충청북도	4,262	3,553	4.4
충청남도	5,924	5,414	2.9
전북특별자치도	6,860	5,536	3.6
전라남도	9,211	8,166	3.6
경상북도	8,055	7,685	3.1
경상남도	7,575	5,929	3.8
제주특별자치도	473	242	3.9

* 자료: 보건복지부 (2024. 4. 30. 기준)

- 아울러, 현재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구입비는 냉방비-난방비-양곡구입비 간에 탄력적으로 통합사용이 가능하나, 자체절감한 경우 그 절감액은 국고에 반납해야 하는 상황임.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 현황(2021~202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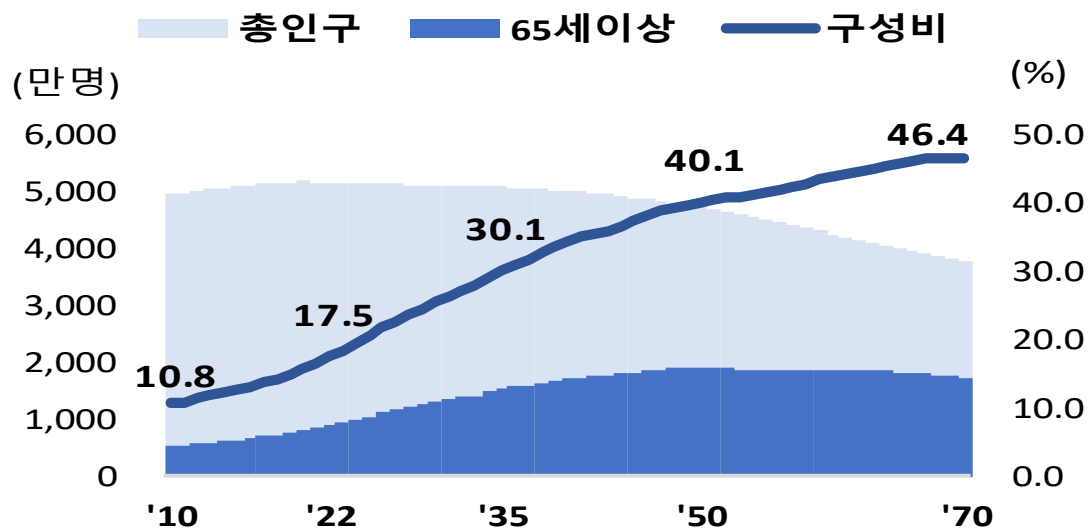
(단위: 억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교부 액	실집 행액	집행잔액 (%)		교부 액	실집 행액	집행잔액 (%)		교부 액	실집 행액	집행잔액 (%)	
금액	342	280	62	(18%)	724	614	110	(15%)	763	704	60	(8%)

*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과 같이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급식에 필요한 부식구입비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양곡구입비·냉난방비 절감비용을 운영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경로당 이용 대상 노인이 증가하고 운영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노인들의 친목도모와 건강한 여가생활 영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고령인구(65세 이상) 및 구성비 추이 >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 다만, 경로당 운영지원(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제외) 및 노인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은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고, 양곡구입비·냉난방비 자체절감 비용의 경로당 운영비 국고 반납 없이 직접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3)의 예외에 해당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하는 등 원활한 입법을 위해서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제4조제1항 단서 관련)

81. **경로당 운영(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제외한다)**
82. 경로당 활성화 지원
83. **경로식당 무료급식**
84.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85. 노인건강진단
86. 치매상담센터 운영
87.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
88.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89.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90. **노인시설 운영**
91. 노인복지회관 신축

□ 한편, 필요경비를 비목별로 한건 한건 나열하기 보다는 경로당 운영비로 통합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경우 자체절감분 반납문제도 최소화되는 등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임. 관련하여, 박수영의원안은 경로당 운영비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경기도의 경우에도 유사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참고로,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관련 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같은 취지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⁴⁾이 우리 위원회의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급식 지원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경로당 식자재구입비 등 운영비 지원과 노인시설 운영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노인복지법」 개정만으로 운영비 국비 지원은 불가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과 함께 개정되어야 하여 관련 부처와 협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 및 단체 의견 >

보건 복지부	◦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급식 지원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며,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부식구입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 ◦ 다만,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지방이양사업(05년~)으로 「노인복지법」 개정만으로 운영비 국비 지원은 불가하며, 보조금법 등 타 법령과 함께 개정되어야 실효성이 발생함. ◦ 또한, 타 지방이양사업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하며, 각 지자체별로 여건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실비를 지원하는 '경로당 냉난방비'는 이용 어르신들의 시설 내 기본생활과 관련된 예산으로 혹한기 및 혹서기에 안전하게 지내시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운영비로 사용 허용 시 과도한 냉난방비 등 절감으로 부작용이 우려됨. ◦ 현재에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는 냉방비·난방비·양곡비 간 탄력적으로 통합사용 가능하며, 잔여 예산은 냉난방 관련 기기 수선 등 경상경비에 활용할 수 있음.
-----------	---

4)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50호),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91호), 김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04호),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45호),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75호),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46호)

기획재정부	◦ 경로당 운영은 '05년 재원(분권교부세, 내국세의 0.94%)과 함께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다시 국비 지원하는 것은 지방이양 취지 등에 역행함. - 경로당은 입지 및 지역여건 등에 따라 운영방식활성화 수준이 다양한 만큼 각 지자체별로 여건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냉난방비 및 양곡비는 전 노인의 건강에 직결된 필수적인 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19년부터 지원함. ◦ 예산 집행잔액은 국가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에 집행잔액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국가재정법보조금법 등에 대한 과도한 특례를 부여하여 지방이양사업에 국가의 보조를 허용하는 결과 초래할 수 있음.
행정안전부	◦ 국가시책으로 노인복지를 강화하는 점을 고려하여 경로당 운영비 전반에 대한 국비지원이 필요함. - 이미 국고보조하고 있는 양곡비와 달리 국비를 미지원하고 있는 부식비에 대해서도 최소 양곡비 수준(보조율 50% 서울20%) 이상의 국고보조가 필요함. ※ 법령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2 제81호 삭제가 필요함.
서울특별시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는 경로당 운영비 항목 중 일부이고, 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예산의 운용 및 결산에 효율적이며, 현장의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민원 등의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광주광역시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보조금 잔액을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하게 할 경우 어르신들이 운영비 사용을 목적으로 과도하게 냉난방 요금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경로당 운영비와 냉난방비 구분 없이 경로당 운영비 지원 일원화로 통합을 건의함.
대전광역시	◦ 경로당 식사 제공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지원하던 냉방비·난방비·양곡비 이외에도 가스비·식재료비·식사도우미 인건비 등 식사 제공 확대를 위한 운영에 필요한 포괄적 비용 지원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경기도	◦ 경로당 운영비 사용범위에 냉난방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구분 없이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경상북도	◦ 경로당 외에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에 양곡구입비, 부식구입비 및 취사용연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것은 예산소요액이 너무 많이 수반되고, 수혜자 이중등록 선별(경로당회원·인복지관회원·노인교실회원 중복가입) 등의 문제 발생 소지가 있음. ◦ 인건비를 포함하면 경로당 대표자가 사용자 지위를 갖게 됨으로, 근로자관련 각종 보험 신고 등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직접 인건비 지원 대신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배치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됨.

부산 광역시 수영구	◦ 경로당 운영비·냉난방비 통합사용 시 냉난방비를 과도하게 절약하여 냉난방비 지원 취지에 맞지 않아 기존법의 유지가 필요함. - 잔여 예산을 예외적으로 임의 전용하게 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근거한 세출예산과목 구분 예산편성 원칙에 어긋남. - 자체 노력으로 절감한 예산 검증 또한 현실적으로 어렵고 냉난방비 지원을 받지 않는 공동주택 경로당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음.
대한 노인회	◦ 노인권의 신장 및 복지증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2. 공공주택사업자의 양로시설 등 설치(민홍철의원안 제35조의2 신설)

-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5조의2(공공주택에 설치된 양로시설 등의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37조의2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양로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 2023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8.4%⁵⁾로, UN에서 정한 총 인구 중 65세 이상이 7% 이상인 경우 고령화 사회, 14% 이상인 경우 고령 사회, 20% 이상인 경우 초고령 사회의 기준에 따를 때 2025년에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노인에 대한 지속적 지원 체계 구축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음.

- 개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⁶⁾가 500세대

5) 2023. 6. 16. 통계청 보도자료, 「고령자의 특성과 의식변화」

6)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이상 규모의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설치한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함과 아울러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 중 하나인 노인의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3. (생략)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3. (생략)

□ 참고로, 「영유아보육법」 제12조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한 어린이집을 원칙적으로 국공립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② (생략)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6. 주택도시시기금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생략)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다만, 금번 개정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45)⁷⁾의 의결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개정안과 같이 5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에서 양로시설과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사업비 증가 문제 외에 입주민 반대 등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과정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양로시설의 경우 현재까지는 입소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되고 있는데, 2023년 12월 기준 175개 양로시설의 입소정원 9,653명이나 입소인원은 59% 수준인 5,699명임.

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45,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양로시설 등 설치) 공공주택사업자는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택단지에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이하 “양로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양로시설등의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양로시설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로시설 등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노인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양로시설 등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시설 설치·운영 비용 문제 및 입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보다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공주택에는 청년·신혼부부 등 다양한 입주민이 있을 수 있어 입주계층에 따라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 노인복지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증가하는 노인 돌봄 수요에 대응할 필요성에는 공감함 ◦ 다만, 양로시설의 경우 설치·운영·지원 등이 지방이양된 사업이며, 노인요양시설은 운영 시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해당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장기요양등급(1,2등급) 판정을 받은 시설급여 수급자 본인부담 20%, 장기요양 급여비용 80%로 운영 - 특히, 양로시설의 경우 입소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는 점에서 양로시설의 설치 및 운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공급 불균형 및 재원 낭비를 초래할 수 있음 · '23.12월 기준 양로시설 175개 입소정원 9,653명 중 입소인원은 5,699명(59%)
국토교통부	◦ 공공주택은 규모 외에도, 분양 또는 임대로 구분되며 분양 주택의 경우 나눔형·선택형·일반형으로 구분되어 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등이 다수로 입주하게 되는 주택유형이 있으며,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분양전환, 통합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구분되어 입주 계층에 따라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 필요 ◦ 500세대 이상의 규모의 공동주택에서 일괄적으로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의무화 할 경우, 해당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증가, 입주민 반대 등의 갈등 발생이 우려됨 - 공공분양의 경우시설 설치 비용이 주택가격에 포함되어 수분양자가 부담

	◦ 또한, 공공주택특별법령상 필요시 공공주택의 시설 일부를 양로시설과 노인요양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이 기존재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를 거쳐 사회복지관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노인주거복지를 위한 양로시설과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무상임대 (제34조, 제34조의7)
대구광역시	◦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운영하기 어려움
세종특별자치시	◦ 지자체의 재정 상황과 설치되는 공공주택 내 노인인구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경상북도	◦ 동일 시군구에 설치된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정원이 많은 경우 시설의 부실화 및 운영상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치·운영은 국가나 지자체에 재량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3. 무인정보단말기,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편의 제공 의무(소병훈의원안 제26조의2, 이수진의의원안 제4조의3 신설 등)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서비스 제공자에게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노인의 정보접근성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소병훈의원안 제26조의2, 이수진의의원안 제4조의3 신설 등).

현 행	소병훈의원안	이수진의의원안
<신 설>	제26조의2(정당한 편의 제공의무) 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	제4조의3(편의 제공의무) 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u>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u> ② <u>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u> ③ <u>제1항 및 제2항</u>	<u>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u> ② <u>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u> ③ <u>제1항 및 제2항</u>
--	--	---

	에 따른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 따른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고연령층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실태 등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의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이용 실태조사(2022.9.)」를 보면 60대 이상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 3.31로 평균 3.58점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다른 연령대와 비교할 때 ‘외식업’, ‘교통시설’, ‘유통점포’ 등 민간부문에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연령대별 키오스크 이용 만족도(5점 만점) >

(단위: 점)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	평균
이용 만족도	3.65	3.57	3.72	3.63	3.31	3.58

< 연령대별 키오스크 이용 만족도(5점 만점) >



- 그리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실시한 「2022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서도 무인 주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6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비대면 활동 어려움(무인 주문 및 안내) >

(단위: %)

연령대	6~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	평균
2021	2.4	1.2	1.4	3.4	9.9	16.9	25.9	4.8
2022	1.9	0.8	1.4	2.9	11.6	25.2	36.0	6.9

- 그 외에도, 「2022 인터넷이용실태조사」의 정보서비스별 이용률을 보면 인터넷·동영상은 큰 차이가 없으나, 새로운 정보통신서비스인 인공지능(AI)·메타버스의 60대 이상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함.

< 정보서비스별 이용률 >

(단위: %)

연령대	3~9세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	평 균
인터넷	91.7	99.5	99.8	99.9	99.6	98.6	94.0	54.7	93.0
검색 시 동영상 이용	26.2	55.0	55.9	55.0	55.2	57.8	56.6	45.2	54.3
연령대		6~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	평 균
인공지능(AI)		51.5	47.0	52.9	47.0	35.8	25.1	19.8	42.4
메타버스		25.1	24.1	15.6	9.5	4.3	1.5	0.1	11.0

- 이러한 현실에서 개정안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무인정보단말기,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운영·제공함에 있어,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도 노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ICT 기술과 정보통신서비스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관련 입법례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제1항⁸⁾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동 조항의 위임을 받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⁹⁾은 2020년 6월 9일 개정을 통해 국가기관등이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정보통신의 범위에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포함시켰음.

□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¹⁰⁾을 보장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 통과되어, 2023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기도 함.

8)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9)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무선 정보통신"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통신을 말한다.

1. 웹사이트

2.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3.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

10) 「2022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따르면,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 평균과 비교할 때 69.9%로 장애인 82.2%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됨.

< 무인정보단말기,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입법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3. 1. 28.)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③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 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② 행위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중략)… 제2항에 따른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중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편으로, 상기한바 ICT 제품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이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에게까지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경우 민간부문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을 수 있어,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할 때, 합리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음.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기술·제품에 적응하지 못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고령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정당한 편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할 때 민간부문의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임.

4. 지역봉사지도원 업무에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지도 업무 추가
및 활동비 지급(정일영의원안 제24조제2항제4호의3 및 제3항
신설)

□ 개정안은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 범위에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지도 업무’를 추가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비 지급 규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제4호의3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第24條(地域奉仕指導員 위촉 및 업무) ① (생략)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奉仕指導員의 업무는 다음各號와 같다. 1. ~ 4의2. (생략) <u><신설></u> 5. (생략) <u><신설></u>	第24條(地域奉仕指導員 위촉 및 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4의2. (현행과 같음) <u>4의3.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지도 업무</u> 5. (현행과 같음) <u>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u>

□ 첫째,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 범위에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지도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과 관련된 사항임.

□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하고,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 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② 도로의 교통정리, 주·정차단속의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행위단속의 보조와 청소년 선도, ③ 충효사상, 전통의례 등 전통문화의 전수교육, ④ 문화재의 보호 및 안내, ⑤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예방 교육, 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¹¹⁾를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¹²⁾로, 노인복지시설 중 가장 보편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접근성도 높아 많은 수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2024년 4월말 현재 전국 경로당 수는 68,658개소임.

-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¹³⁾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28.1%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고, 45.8%의 노인이 향후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앞으로 더 많은 수의 노인들이 경로당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됨¹⁴⁾.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 자원봉사활동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임([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12)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2.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3) 「노인복지법」 제5조제1항(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며, 2008년 시작되어 최근 2020년, 2023년 실태조사가 실시되었음.

1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2020, p.505.

□ 경로당은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안내·지도가 필요해 보이고, 특히, 2023년 10월 현재 14개 시·도에서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 32,100명 중 경로당 회장이 위촉된 수도 26,332명(82%)에 이르는바, 이들을 활용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 범위에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지도 업무를 법제화하려는 입법조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13개 시도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현황(2023. 10. 기준)>

(단위: 개소, 명)

구분	지역봉사지도원 수	경로당 수	지역봉사지도원 중 경로당 회장이 겸임하고 있는 수
서울특별시	1,500	3,513	1,118
부산광역시	2,130	2,401	1,933
대구광역시	926	1,580	394
인천광역시	1,361	1,460	1,217
광주광역시	—	1,389	—
대전광역시	1,691	846	846
울산광역시	146	834	140
세종특별자치시	505	513	365
경기도	5,371	10,914	4,715
강원특별자치도	3,511	3,128	3,014
충청북도	—	4,244	—
충청남도	4,629	5,902	3,721
전북특별자치도	1,344	6,838	710
전라남도	1,195	9,204	1,186
경상북도	2,082	8,024	2,030
경상남도	5,709	7,208	4,943
제주특별자치도	—	466	—
합 계	32,100	68,464	26,332

* 자료: 보건복지부(기초지방자치단체별 조사결과 취합)

- 다만, 개정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하는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에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지도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친목도모 등을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경로당의 운영에 불필요한 간섭이나 관여로 비춰질 우려는 없는지 검토가 있어야 하겠고, 아울러 현행법상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범위를 보면 공공적 시설·공적 성격이 강한 분야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도 감안될 필요가 있겠음.
- 둘째,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과 관련된 사항임.
-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8조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상향조정한 것으로 위촉된 지역봉사지도원이 보다 안정적이고 활동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 참고로, 현재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한 활동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음.

<13개 시도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급 현황(2023.10. 기준)>

구분	1인당 월 활동비(천원)
서울특별시	30~1,000
부산광역시	50~200
대구광역시	30~50
인천광역시	50~100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100
울산광역시	25
세종특별자치시	50
경기도	30~200
강원특별자치도	50~200
충청북도	—
충청남도	50~100
전북특별자치도	50~200
전라남도	20~50
경상북도	30~200
경상남도	30~300
제주특별자치도	—

* 자료: 보건복지부(기초지방자치단체별 조사결과 취합)

□ 개정안과 관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봉사지도원의 경험 등을 경로당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경로당 시설관리·운영 부담 완화 등 경로당 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광주광역시는 동 개정안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촉 및 지급요청 등 민원 발생과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규정을 유지하자는 입장이고, 대한노인회에서는 노인 권익 신장 및 복지 증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임.

5.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에서 간호·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 포함(문정복의원안 제39조의6제2항제1호의2 등)

□ 개정안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u>의료기관</u> 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u>의료기관의 장</u> <u><신설></u>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1. ----- <u>의료기관</u> (이하 이 항에서 “ <u>의료기관</u> ”이라 한다)----- ----- ----- 1의2. <u>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u>

	<u>는 자</u>
2. ~ 16. (생 략)	2. ~ 16.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 노인학대 발생현황을 보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2022년 전체 노인학대 발생건수는 6,807건으로 2018년 대비 31.2% 증가하였음. 이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건은 1,125건이며,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한 건은 18건임.

< 신고자별 노인학대 발생현황 (2018~2022) >

(단위: 명, %)

신고자	2018	2019	2020	2021	2022	
						2018대비 증감률
신고의무자	767	877	939	860	1,125	46.7%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6)	(24)	(35)	(23)	(18)	(△30.8%)
비신고의무자	4,421	4,366	5,320	5,914	5,682	28.5%
합 계	5,188	5,243	6,259	6,774	6,807	31.2%

* 자료: 「2022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 현행법 제39조의6제2항은 장기요양기관 등 다른 시설의 경우 ‘시설의 종사자’를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의 경우에만 종사자 중 ‘의료인’만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음.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규정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6.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의료법」 제3조제1항15)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16) 아닌 업무

- 15)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신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 16)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종사자는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 안마사, 영양사, 감염관리 업무 수행자, 보안전담인력,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행정직원 등 다양한 직종의 인력이 있음.

<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 아닌 업무 종사자 현황 >

의료인이 아닌 업무 종사자		근거규정	비 고
간호조무사		「의료법」 제80조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제6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의료유사업자 (접골사·침사·구사)		「의료법」 제81조	
안마사		「의료법」 제82조	
보안전담인력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6	
약사, 한약사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사회복지사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제2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제6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영양사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제6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의료 기 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제12호에 따른 신고의무대상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감염관리 업무 수행자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	
보건교육사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	
병원행정사, 미화직원, 보안직원, 이송직원 등		—	

* 자료: 보건복지부

- 이중 의료기사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제12호(「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¹⁷⁾에 따른 의료기사)에 따라 신고 의무자이나,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 등은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다른 시설 종사자와 달리 신고의무자가 아님.
-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하는 경우,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노인학대의 조기발견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 보건복지부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환자의 간호·진료보조 등 환자와 직접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포함되면 의료기관 내 학대 조기발견 등 노인학대 신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임.
- 한편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도 「노인복지법」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도 사회취약계층 학대 예방 차원에서 금번 개정안의 취지와 같이 개정할 필요도 있겠음.

< 아동학대·장애인학대 관련 의료기관의 신고의무자 규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1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중 략)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①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6. 노인복지관의 노인종합복지관으로서 별도 신설 및 경로당 식사 제공 지원사항 규정(이수진의원안 제31조제8호 등)

□ 개정안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별도로 신설하고 경로당 식사 제공 지원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 31조제8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u><신설></u>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 ----- -----. 1. ~ 7. (현행과 같음) <u>8. 노인종합복지관</u>
제31조의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u>제37조제2항</u> 및 <u>제39조제2항에</u>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의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 ----- <u>제37조제2항</u> , 제39조제2항 및 <u>제39조의23</u> <u>제2항에</u> ----- ----- ----- ----- -----.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u>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u>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 ----- -----. <u><삭제></u>

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3. (생략)

② (생략)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① (생략)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신설>

2.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① (현행과 같음)

② -----
-----운
영에 필요한 냉난방 비용 및
취사용 연료비의-----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 공동급식 및 주 5일 이상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주·부식 구입비, 인건비 등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9조의2(노인종합복지관) ①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상담 및 돌봄 서비스 : 지역 사회 노인들의 신체적·정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노인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상담, 저소득층 노인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례관리 및 체계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2. 건강생활지원 서비스 : 노인의 질병예방,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위하여 건강검진, 건강상담, 급식, 통증관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3. 노년사회화교육 서비스 : 노인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를 위하여 평생교육, 취미·여가,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4. 정보화교육 서비스 : 노인과 다른 세대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무인정보단말기,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신 설>

이용과 관련된 정보화 교육, 체험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5. 사회참여·권익증진 서비스

: 노인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일자리 연계, 소득 지원, 후원·자원봉사 등 지역자원 동원 사업, 노인 인권보호·권익증진 관련 교육·캠페인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6. 그 밖에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서비스

② 노인종합복지관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3(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

제40조(변경·폐지 등) ①·②
(생략)

③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
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
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
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장, 노

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노인종합복지관의 시설, 인
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
치신고, 설치·운영자가 준수하
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

제40조(변경·폐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자, 제3
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
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제39조의23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노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한 자가-----

-----.

④ (현행과 같음)

⑤ -----

인의료복지시설의 장,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장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43조(사업의 정지 등) ① (생략)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7조제4항 또는 제39조제4항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 5. (생략)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장,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노인종합복지관의 장은-----

⑥ (현행과 같음)

제43조(사업의 정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노인종합복지관이-----

1. 제37조제4항, 제39조제4항 또는 제39조의23제4항-----

2. ~ 5. (현행과 같음)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제1항에 따라 사업이 정지 또는 폐지되거나 <u>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u>이 제2항에 따라 사업이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 ----- ----- -----<u>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노인종합복지관</u>이----- ----- ----- ----- -----.
④ (생략) 제45조(비용의 부담)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1. 2. (생략) 3. 제33조제1항·제35조제1항·<u>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u>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비용의 부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2. (현행과 같음) 3. -----<u>제37조제1항·제39조제1항 및 제39조의2제1항</u>의----- ----- -----
제46조(비용의 수납 및 청구) ① ~ ⑥ (생략)	제46조(비용의 수납 및 청구)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편의를 제공하는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 (생략)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2. ~ 6. (생략)

⑦ -----
-노인여가복지시설,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제39조의2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종합복지관을-----

-----.

⑧ (현행과 같음)

제57조(벌칙) -----

-----.

1. -----
제37조제2항, 제39조제2항 또는 제39조의23제2항에-----

-----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노인종합복지관을-----

2. ~ 6. (현행과 같음)

- (현행 노인복지관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재정립) 현행법상 노인복지관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서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¹⁸⁾로 세부적으로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 ‘건강생활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노인복지관 사업 >

기본 사업	상담	일반상담 및 정보제공, 전문상담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	위기 및 취약노인지원, 지역사회 생활자원연계 및 지원, 가족 기능지원
	건강생활 지원	건강증진지원, 기능회복지원, 급식지원
	노년 사회화 교육	평생교육지원, 취미여가지원
	지역자원 및 조직화	지역자원개발, 지역복지연계, 주거지원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사회참여지원, 노인권익증진, 고용 및 소득지원
선택 사업	돌봄	요양서비스
	기타	제시되지 않은 사업 자체 수행 가능

* 자료: 「2024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1」 p.134

- 참고로, 2022년 기준 전국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은 69,838개소가 운영 중이고, 이중 노인복지관은 418개소임.

18) 「2024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1」 p.127

<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60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2018~2022) >

(단위: 개소, 만명,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대상자)	68,013	68,413	69,005	68,874	69,838
노인복지관 (60세 이상의 자)	385	391	398	408	418
경로당 (65세 이상의 자)	66,286	66,737	67,316	67,211	68,180
노인교실 (60세 이상의 자)	1,342	1,285	1,291	1,255	1,240
60세 이상 노인인구	1,119만명	1,179만명	1,245만명	1,299만명	1,395만명
비중(%)	21.7%	22.9%	24.1%	25.1%	27.0%

* 자료: 보건복지부

□ 그리고,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법에 독립적인 시설로 규정된 노인복지회관(現노인복지관)은 1997년 ‘1개 시설이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세부시설 명칭이 아닌 제공 서비스 종류로 개편되면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규정된 바 있음.

<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노인복지관의 변화>

1981년 제정법	1989년 전부개정	1997년 전부개정	2004년 일부개정	2007년 일부개정
○ 노인복지시설 - 양로시설 - 노인요양시설 - 유료양로시설 - 노인복지회관	○ 노인복지시설 - 양로시설 - 노인요양시설 - 실비양로시설 - 실비노인요양시설 - 유료양로시설 - 유료노인요양시설 - 노인복지회관 - 노인복지주택 ○ 노인여가시설 - 경로당 - 노인교실 - 노인휴양소	○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회관 - 경로당 - 노인교실 - 노인휴양소 -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회관 - 경로당 - 노인교실 - 노인휴양소 -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 경로당 - 노인교실 - 노인휴양소 ¹⁹⁾ -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보호전문기관

* 자료: 보건복지부

- 한편,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저렴한 비용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기관이었던 노인복지관²⁰⁾은 고령화에 따라 건강·일자리·돌봄 등 사업이 확대되면서도 제도상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머물러 있어 종합적 노인복지서비스 전달기관으로서의 기반과 위상이 취약하다는 지적²¹⁾이 있음.

< 노인복지관 사업의 주요변화 >

	2007년	2014년	2018년	2023년
기본사업	- 사회교육 - 노인일자리 - 보건·재활 증진 - 상담지도 - 자원봉사활성화 - 노인건강운동 - 경로당연계 프로그램지원	- 평생교육 지원 - 취미여가 지원 - 고용지원 - 기능회복 지원 - 정서생활 지원 - 사회참여 지원 - 독거노인지원 - 취약노인보호 핫라인구축	- 평생교육 지원 - 취미여가 지원 - 건강생활지원 (치매예방 포함) - 상담·정보제공 - 사회참여 지원 - 위기·독거노인지원 - 정서·사회생활 지원 - 지역자원 개발·연계 - 노인권익증진	- 상담 -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 - 건강생활지원 - 노년사회화교육 - 지역자원 및 조직화 -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선택사업	- 재가복지 - 경로식당·식사배달 - 방문보건 - 목욕서비스	- 건강생활지원 (기능회복지원 제외) - 주거지원 - 소득지원 - 가족기능지원 - 가족통합지원 - 지역자원개발 - 지역복지연계 (경로당혁신) - 노인권익증진	- 건강생활지원 (기능회복지원, 급식지원) - 고용·소득지원 - 가족기능지원 - 가족통합지원 - 돌봄 요양서비스	- 돌봄 요양서비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사업

* 자료: 보건복지부

-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일자리·돌봄 등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관의 변화된 역할·기능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19) 2011년 6월 7일 일부개정을 통해 삭제됨.

20) 「노인복지법」(법률 제3453호, 1981.6.5. 제정) 제13조(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4. 노인복지회관: 무료로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교양·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1) 원시연, 「노인복지관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5.

노인복지사업의 중심적 조직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의 위상을 제고하고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특히, 개정안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의 서비스 범위로서 ‘상담 및 돌봄 서비스’, ‘건강생활지원 서비스’, ‘노년사회화교육 서비스’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실질적으로 제공 중인 기능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기도 함.

< 개정안의 노인종합복지관과 현행 노인복지관 서비스 범위 >

노인종합복지관(개정안)	노인복지관(현행)
상담 및 돌봄서비스	상담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
건강생활지원 서비스	건강생활지원
노년사회화교육 서비스	노년사회화교육
정보화교육 서비스	
사회참여·권익증진 서비스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그 밖에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 서비스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돌봄 요양서비스
	기타(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사업)

* 자료: 보건복지부

- 다만,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서 노인복지관을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적인 노인복지시설(노인종합복지관)로의 재정립 문제는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부터 이어져 온 노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 상당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개정에 따른 영향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논의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관련하여, 개정안의 건강생활지원 서비스 중 건강검진·건강상담 등의 업무는 보건소(「지역보건법」 제11조)의 업무와, 사회참여·권익증진 서비스 중 일자리 연계 업무는 노인 일자리 전달기관 중 노인

취업알선기관(「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업무와 중복될 가능성은 없는지도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봄.

□ 그 외 현행 법률은 1개 시설이 여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세부 시설 명칭이 아닌 제공서비스 종류(주거복지·의료복지·여가복지·재가노인복지·노인보호)로 노인복지시설 체계가 구성되어 있다²²⁾는 점 등도 법안 심사 시 고려될 필요가 있겠음.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관은 현재도 이용노인의 욕구 및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여가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분리할 법률 개정의 실익이 적다는 입장임.

< 개정안에 대한 관련단체 의견 >

한국노인 종합복지관 협회	◦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노인복지관의 현재 기능을 반영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함. ◦ 1997년 전부개정된 노인복지법에서 '노인복지회관'은 건강의 증진·교양·오락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정의. 그러나 2007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관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 재가복지 등 종합적 노인복지 주요전달체계로서의 종합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기능과 역할이 전환됨. 명칭변경과 함께 기능과 역할이 변경되고 사업이 확대되었으나 현행 노인복지법 시설분류는 여전히 20년전에 머물러 있음. ◦ 여가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던 노인복지관에 대해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용어와 정의를 개정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함.
---------------------	--

22) 「노인복지법」 제31조 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대한물리 치료사협회	◦ 신설하는 제39조의22(노인종합복지관)의 서비스 영역의 사업들을 현재에도 진행하는 사업임. ◦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서 노인복지관만 따로 신설되면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명시되는 노인복지시설과 법적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역할에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임. ◦ 노인종합복지관이 신설되면 시행규칙 [별표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이 삭제되어 물리치료가 배제됨으로써 노인복지관의 노인건강증진 기능 약화와 물리치료종사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	--

□ (경로당 식사 제공 지원사항 규정)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로 2024년 4월말 기준, 전국 총 68,658개가 있음. 친목도모, 취미여가프로그램이용 외에 취약노인의 경우 경로당을 폭염·혹한 등을 대피하거나 식사 해결 등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는데, 독거노인 증가 등으로 식사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음.

< 독거노인 비율과 경로당 이용 이유 >

(복수응답 가능 / 단위: %)

연도	독거노인 비율	경로당 이용 이유							
		친목도모	식사 서비스 이용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	정서지원 프로그램 이용	일자리 사업 참여	자원봉사 활동 참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2017	19.0	91.4	57.2	8.3	9.0	0.3	0.6	1.5	0.6
2020	19.8	82.9	62.5	19.0	11.0	2.3	1.6	1.3	0.2

* 자료: 「장래인구추계」, 「노인 실태조사」

* 독거노인 비율은 60대 이상 인구 중 비율임

□ 이처럼 경로당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국고보조는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 지원에 그치고 있는데, 2024년 경로당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 예산은 800억원 수준임.

< 2024년도 경로당 지원 현황 >

구분	냉방비	난방비	양곡구입비	운영비
지원주체	국고 50%(서울 20%), 지방비 50%(서울 80%) * 「지방교부세법」 개정('14년)에 따라 '15년부터 특별교부세 미교부			지방비 100%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제37조의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지원내용	33만원 월 16.5만원, (2개월) 지원	194만원 월 40만원, (5개월) 지원	41.8만원 정부양곡 20kg (52,340원) 8포 지원	공과금, 식사보조비, 물품구입비, 생활용품비 등 지자체마다 상이

* 자료: 보건복지부

□ 경로당 이용 이유에서 식사 이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지원부족으로 2020년 기준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은 66,843개소 중 28,041개소(42.0%)이고, 급식인력이 지원되는 곳은 15,037개소(22.5%)에 불과함.

< 경로당 식사 제공 및 지원인력 유무(2020) >

(조사기간: 2020.8.29~2020.9.29. / 단위: 개소, %)

경로당		식사 제공	
		주5회 이상	급식인력 지원
66,843	28,041 (42.0%)	7,745 (11.6%)	15,037 (22.5%)

* 자료: 「경로당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이화여대산학협력단, 2020.

□ 보건복지부가 2024년 4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경로당 68,658개 중 58,558개(85.3%)가 식사를 제공하고 있어 2020년보다 개선되었으나, 평균 주 3.4회 식사가 제공되고 있으며 지역 간에 격차가 큰 것(2.9회~4.4회)으로 확인되었음.

< 지역별 경로당 식사 제공 현황 >

시 도	경로당 수	식사 제공중인 경로당 수	주 7일 중 평균 식사 제공횟수
합계	68,658	58,558	3.4
서울특별시	3,609	3,090	3.3
부산광역시	2,403	2,152	3.3
대구광역시	1,809	1,318	3.3
인천광역시	1,555	1,341	3.7
광주광역시	1,380	1,291	3.6
대전광역시	850	814	3.0
울산광역시	836	695	3.0
세종특별자치시	517	498	3.2
경기도	10,020	8,391	3.1
강원특별자치도	3,319	2,443	3.2
충청북도	4,262	3,553	4.4
충청남도	5,924	5,414	2.9
전북특별자치도	6,860	5,536	3.6
전라남도	9,211	8,166	3.6
경상북도	8,055	7,685	3.1
경상남도	7,575	5,929	3.8
제주특별자치도	473	242	3.9

* 자료: 보건복지부 (2024. 4. 30. 기준)

- 아울러, 현재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구입비는 냉방비-난방비-양곡구입비 간에 탄력적으로 통합사용이 가능하나, 자체절감한 경우 그 절감액은 국고에 반납해야 하는 상황임.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 현황(2021~202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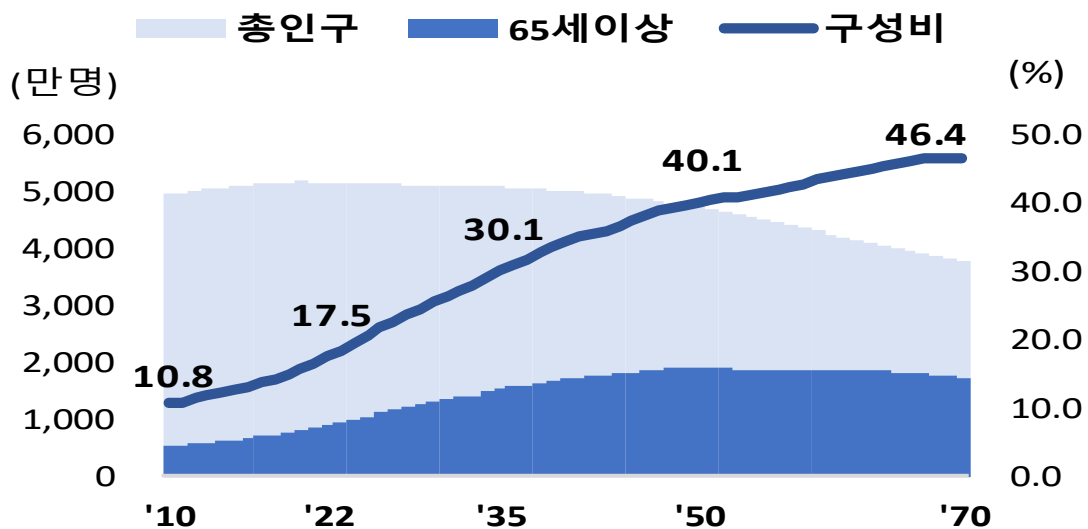
(단위: 억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교부 액	실집 행액	집행잔액		교부 액	실집 행액	집행잔액		교부 액	실집 행액	집행잔액	
				(%)				(%)				(%)
금액	342	280	62	(18%)	724	614	110	(15%)	763	704	60	(8%)

*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과 같이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급식에 필요한 부식구입비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양곡구입비·냉난방비 절감비용을 운영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경로당 이용 대상 노인이 증가하고 운영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노인들의 친목도모와 건강한 여가생활 영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고령인구(65세 이상) 및 구성비 추이 >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 다만, 경로당 운영지원(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제외) 및 노인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은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고, 양곡구입비·냉난방비 자체절감 비용의 경로당 운영비 국고 반납 없이 직접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²³⁾의 예외에 해당

2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하는 등 원활한 입법을 위해서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제4조제1항 단서 관련)

81. **경로당 운영(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제외한다)**
82. 경로당 활성화 지원
83. **경로식당 무료급식**
84.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85. 노인건강진단
86. 치매상담센터 운영
87.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
88.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89.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90. **노인시설 운영**
91. 노인복지회관 신축

□ 한편, 필요경비를 비목별로 한건 한건 나열하기 보다는 경로당 운영비로 통합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경우 자체절감분 반납문제도 최소화되는 등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임. 관련하여, 박수영의원안은 경로당 운영비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경기도의 경우에도 유사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참고로,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관련 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같은 취지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²⁴⁾이 우리 위원회의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급식 지원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경로당 식자재구입비 등 운영비 지원과 노인시설 운영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노인복지법」 개정만으로 운영비 국비 지원은 불가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과 함께 개정되어야 하여 관련 부처와 협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 및 단체 의견 >

보건 복지부	◦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급식 지원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며,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부식구입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 ◦ 다만,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지방이양사업(05년~)으로 「노인복지법」 개정만으로 운영비 국비 지원은 불가하며, 보조금법 등 타 법령과 함께 개정되어야 실효성이 발생함. ◦ 또한, 타 지방이양사업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하며, 각 지자체별로 여건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실비를 지원하는 '경로당 냉난방비'는 이용 어르신들의 시설 내 기본생활과 관련된 예산으로 혹한기 및 혹서기에 안전하게 지내시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운영비로 사용 허용 시 과도한 냉난방비 등 절감으로 부작용이 우려됨. ◦ 현재에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는 냉방비·난방비·양곡비 간 탄력적으로 통합사용 가능하며, 잔여 예산은 냉난방 관련 기기 수선 등 경상경비에 활용할 수 있음.
-----------	---

24)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50호),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91호), 김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04호),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45호),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75호),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46호)

기획재정부	◦ 경로당 운영은 '05년 재원(분권교부세, 내국세의 0.94%)과 함께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다시 국비 지원하는 것은 지방이양 취지 등에 역행함. - 경로당은 입지 및 지역여건 등에 따라 운영방식활성화 수준이 다양한 만큼 각 지자체별로 여건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냉난방비 및 양곡비는 전 노인의 건강에 직결된 필수적인 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19년부터 지원함. ◦ 예산 집행잔액은 국가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에 집행잔액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국가재정법보조금법 등에 대한 과도한 특례를 부여하여 지방이양사업에 국가의 보조를 허용하는 결과 초래할 수 있음.
행정안전부	◦ 국가시책으로 노인복지를 강화하는 점을 고려하여 경로당 운영비 전반에 대한 국비지원이 필요함. - 이미 국고보조하고 있는 양곡비와 달리 국비를 미지원하고 있는 부식비에 대해서도 최소 양곡비 수준(보조율 50% 서울20%) 이상의 국고보조가 필요함. ※ 법령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2 제81호 삭제가 필요함.
서울특별시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는 경로당 운영비 항목 중 일부이고, 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예산의 운용 및 결산에 효율적이며, 현장의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민원 등의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광주광역시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보조금 잔액을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하게 할 경우 어르신들이 운영비 사용을 목적으로 과도하게 냉난방 요금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경로당 운영비와 냉난방비 구분 없이 경로당 운영비 지원 일원화로 통합을 건의함.
대전광역시	◦ 경로당 식사 제공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지원하던 냉방비·난방비·양곡비 이외에도 가스비·식재료비·식사도우미 인건비 등 식사 제공 확대를 위한 운영에 필요한 포괄적 비용 지원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경기도	◦ 경로당 운영비 사용범위에 냉난방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구분 없이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경상북도	◦ 경로당 외에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에 양곡구입비, 부식구입비 및 취사용연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것은 예산소요액이 너무 많이 수반되고, 수혜자 이중등록 선별(경로당회원·인복지관회원·노인교실회원 중복가입) 등의 문제 발생 소지가 있음. ◦ 인건비를 포함하면 경로당 대표자가 사용자 지위를 갖게 됨으로, 근로자관련 각종 보험 신고 등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직접 인건비 지원 대신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배치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됨.

부산 광역시 수영구	◦ 경로당 운영비·냉난방비 통합사용 시 냉난방비를 과도하게 절약하여 냉난방비 지원 취지에 맞지 않아 기존법의 유지가 필요함. - 잔여 예산을 예외적으로 임의 전용하게 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근거한 세출예산과목 구분 예산편성 원칙에 어긋남. - 자체 노력으로 절감한 예산 검증 또한 현실적으로 어렵고 냉난방비 지원을 받지 않는 공동주택 경로당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음.
대한 노인회	◦ 노인권의 신장 및 복지증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참고1】	현행법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현황
--------------	---------------------------

(기준: 2023. 12. 31. / 단위: 명)

구 분	인원 수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568,053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355,698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노인복지법」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8,77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458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9,610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617,52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13,896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3,11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0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37,13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308,004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3,344
「지역보건법」 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26,95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243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무요원	20,883
합 계	2,036,501

【참고2】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면허등록자 수 및 활동자 수
--------------	-----------------------------------

(기준: 2024. 6. 30. / 단위: 명)

연 번	직 종	관계법령	면허등록자*	활동자수**
1	의 사	의료법	140,459	114,104
2	치과 의사		35,029	28,923
3	한의사		28,945	23,535
4	간호사		526,622	277,263
5	조산사		8,098	61
6	간호조무사		901,310	223,126
7	약사	약사법	78,463	42,119
8	한약사		3,264	-
9	임상병리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73,159	29,484
10	방사선사		56,588	33,476
11	물리치료사		93,263	50,800
12	작업치료사		27,451	9,149
13	치과기공사		39,504	-
14	치과위생사		106,254	48,953
15	보건의료정보관리사		33,043	5,674
16	안경사		49,901	-
17	위생사	공중위생관리법	109,472	-
18	영양사	국민영양관리법	175,918	-
19	응급구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급) 26,778	-
			(2급) 23,318	-
20	보건교육사***	국민건강증진법	13,247	-
합 계			2,550,086	787,191

* 보건복지부 면허발급시스템(사망자 제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통계청 KOSIS, 영양기관 현황): 치과기공사, 안경사, 영양사는 주 활동 기관이 영양기관이 아니므로 표기 제외

*** 한국건강증진개발원(보건교육사 자격관리시스템)

【참고3】	노인복지관 사업 및 프로그램 예시(「2024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	---

I. 상담	1. 일반상담 및 정보제공	노인의 복지 정보 제공 일반상담(이용상담, 접수상담) 외부 전문가 활용 정보 제공 상담(경제, 법률, 주택상담, 연금상담, 건강상담, 세무상담)
	2. 전문상담	우울 및 자살예방프로그램, 죽음준비프로그램,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 학대 및 인권, 인지 및 행동 심리 상담, 애도, 상실, 관계(부부관계, 또래관계, 자녀관계 등) 등에 대한 개별 혹은 집단 개입 등
II.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돌봄	3. 위기 및 취약노인지원	취약노인의 신체·정서·사회적 자립 지원 프로그램 운영,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사례관리사업,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유관기관 등과 연계(취약노인연계망구축사업)
	4. 지역사회 생활자원연계 및 지원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조정, 중재, 의뢰, 옹호, 자원연계 강화를 위한 지원 활동, 지역사회 읍면동 복지 허브화와 맞춤 돌봄에 관한 지역자원 발굴 연계
	5. 가족기능지원	노인과 관련된 가족상담, 가족관계프로그램, 가족캠프, 세대통합프로 그램 등
III. 건강생활 지원	6. 건강증진지원	건강교육, 건강상담, 건강교실(건강체조, 기체조, 요가 등), 독거노인지원 사업(기존 재가사업), 노인건강운동, 치매예방 인지활동서비스, 물리치료 등
	7. 기능회복지원	양·한방진료, 작업요법, 운동요법, ADL훈련 등
	8. 급식지원	경로식당(중식서비스), 밑반찬·도시락배달, 푸드뱅크 등
IV. 노년 사회화 교육	9. 평생교육지원	노인역량강화교육, 정보화교육, 사회화교육, 시민사회교육, 한글교실, 외국어교실, 교양교실, 인문학교육, 예비노인 은퇴준비 프로그램, 경제교육, 생애말기 준비·설계 교육, 웰다잉교육 등
	10. 취미여가지원	예능활동(음악, 미술, 생활도예, 서예, 댄스), 문화활동(연극, 사진, 영화, 바둑, 장기, 레크리에이션), 취미활동(종이접기, 손뜨개질, 민속놀이), 체육활동(탁구, 당구, 게이트볼), 동아리 활동 등
V. 지역자원 및 조직화	11. 지역자원개발	자원봉사자 발굴·관리, 후원자 개발, 외부 재정지원기관 사업 수탁 등
	12. 지역복지연계	경로당 프로그램 연계 등의 지역복지기관 연계, 지역협력사업(경로행사, 나들이 등) 등
	13. 주거지원	주택수리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도배 등) 등
VI.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14. 사회참여지원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지역 봉사활동, 교통안전봉사, 동아리·클럽 활동 지원, 교통편의서비스 등
	15. 노인권익증진	정책건의, 노인인권 옹호, 노인인식개선사업, 편의시설 설치, 노인소비자피해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성교육 등
	16. 고용 및 소득지원	고령자취업지원 사업, 취업교육, 창업지원(사회적협동조합 등)사업 등
(선택사업) 돌봄	17. 요양서비스	치매환자 프로그램, 주·야간보호 등

【참고4】	 시도별 노인복지관 설치현황
--------------	------------------------

(기준: 2023. 12. 31. / 단위: 명, 개소)

시 도	60세 이상 노인인구 (A)	노인복지관 (B)	시설당 노인인구 (A/B)
서울특별시	2,440,415	91	26,818
부산광역시	1,040,733	34	30,610
대구광역시	671,088	24	27,962
인천광역시	749,001	26	28,808
광주광역시	339,020	10	33,902
대전광역시	357,071	8	44,634
울산광역시	272,754	13	20,981
세종특별자치시	63,482	—	—
경기도	3,166,838	67	47,266
강원특별자치도	514,346	17	30,256
충청북도	473,101	22	21,505
충청남도	633,445	19	33,339
전북특별자치도	578,227	29	19,939
전라남도	638,809	33	19,358
경상북도	875,605	23	38,070
경상남도	962,206	20	48,110
제주특별자치도	173,969	2	86,985
합 계	13,950,110	438	31,850

문 의 처

02)6788-5499